



보도시점 2024. 3. 19.(화) 별도 공지 시  
3. 20.(수) 조간

배포 2024. 3. 19.(화) 09:00

##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9.)
- 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하였다.

- \* ① 지급단가 : ▲매도 (당초) 330만원/ha → (개편) 600  
▲임대 (당초) 250만원/ha → (개편) 480(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
- ② 가입연령 / 지급기한 : (당초) 65~74세 / 75세까지 → (개편안) 65~79세 / 84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문의처: ☎ 1577-7770)을 가져 달라”고 하였다.

- 붙임 1. 농산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주요 개정 내용
- 2.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신청 설명 자료

담당 부서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나영 (044-201-1771)
		담당자	서기관	오동진 (044-201-1774)



**□ 추진 배경**

- 고령 농업인 지원 혜택을 강화하여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 추진

\*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종사한 65~7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 농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농지이양은퇴직불 관련 '24년 신규 예산 : 126억원

**□ 주요 개정 내용**

-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함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안 제2조~제43조)

\* △경영이양 → 농지이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보조금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 농지의 이양대상 및 이양방식 개선(안 제2조 제3호 및 제5호)

- 이양대상에 기존 '전업농업인' 외 '후계·청년농업인'을 추가 명시
- 이양방식을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한 임대 또는 임대 위탁)'로 함

- 사업 목적 변경(안 제3조, 제4조)

-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함

- 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제4조)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기간이 남아있는 임대 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과 기존 경영이양직불 지급 대상자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 유도과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 하는 제도

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 하도록 지원



###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은?

#### 신청 대상 요건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 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농지 요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적이 허용되는 농지(1천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자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지원단가\***  
(매도)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상한 연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지급한도: (매도) 월 200만원(4ha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월 160만원(4ha 기준)

**지급 기간**  
기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연령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 이상 75세
지급기간	6년	7년	8년	9년	10년

###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은?

**매도(1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

**지원 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매도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1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연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농지이양 은퇴직불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방법은?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신청방법**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

**본 사업대상자 확정** 예비사업대상자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

### 농지이양 은퇴직불 묻고 답하기

1.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에 당해연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음. 당해 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2. 농지이양 후 계속 경적이 허용된 농지라면 어떤 농지인가?  
→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적 허용. 다만,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까지 경적이 가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 고려)으로 결정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약정제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며,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5. 종전 경영이양직불을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최대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아울러 남은 기간만큼은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6.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제결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제결 당시 계속 경적이 허용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 이양은퇴보조금을 차감함
7.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함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 연락처

본부명	지사명	사무실 연락처
경기 지역 본부	여주 이천	031-887-7508
	일평 광주 서울	031-770-8015
	화천 수원	031-240-4889
	연천 포천 가평	031-860-8924
	파주	031-950-3234
	고양	031-929-9411
	강화 중산	032-930-2510
	김포	031-980-8107
	평택	031-680-5669
	안성	031-678-3531
	홍천 춘천	033-430-9511
	원주	033-749-1606
	강릉	033-650-3213
	영북	033-630-0120
	철원	033-450-1333
충북 지역 본부	옥천 영동	043-730-2512
	보은	043-540-2523
	유한 영동	043-730-2512
	진천	043-530-6752
	괴산 충흥	043-830-5116
	공성	043-871-7323
	홍주 제천 단양	043-841-3024
	천안	041-539-7092
	공주	041-850-6433
	보령	041-930-7843
	아산	041-539-7133
	서산 태안	041-660-8534
	논산	041-730-2127
	세충 대천 금산	044-860-3310
	부여	041-837-9529
충남 지역 본부	서천	041-950-7707
	청양	041-940-1730
	홍성	041-630-5719
	예산	041-330-3533
	당진	041-351-9157
	남동	063-670-2014
	순창	063-650-7030
	홍성	063-540-1141
	부안	063-580-1016
	금산	063-440-5615
	천안	063-860-0033
	천주 함성	063-270-0522
	고창	063-560-1556
	정읍	063-530-0312
	무진상	063-350-7031
전북 지역 본부	경주	062-380-8624
	손천 광양 여수	061-740-1135
	나주	061-330-9522
	담양	061-380-4115
	곡성	061-360-1183
	구례	061-780-3106
	고흥	061-830-2232
	보성	061-850-2521
	화순	061-370-8517
	장흥	061-860-7602
	장진	061-430-7725
	해남 영도	061-530-1513
	영광	061-470-5537
	목포 무안 신안	061-260-5524
	영광	061-320-5213
장성	061-350-6535	
경북 지역 본부	창성	061-390-8634
	진도	061-540-5421
	포항 울릉	054-720-7006
	경주	054-778-1006
	안동	054-850-5723
	구미 김천	054-712-3412
	영주 풍화	054-639-5022
	영천	054-339-5005
	상주	054-531-3614
	문경	054-550-6313
	경산 청도	055-819-6011
	의성 영위	054-830-8123
	철성 영주	054-870-0513
	영덕 울진	054-730-5011
	고령	054-950-0721
성주	054-930-0700	
칠곡	054-800-5000	
경남 지역 본부	해남	054-650-7123
	달성	053-610-3823
	김해 양산 창원	055-320-4832
	고성 통영 거제	055-670-7003
	물산	052-290-5302
	진주 산청	055-760-2534
	의령	055-570-6017
	합천	055-580-0320
	창녕	055-530-7772
	밀양	055-359-6309
	창원	055-250-2243
	사천	055-851-8122
	거창 함양	055-940-5524
	합천	055-930-8263
	해동 남해	055-880-5126
제주본부	서귀포지부 064-750-8885	